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317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목록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규설치 등의 경우마다 별표 목록의 개정을 위해 비효율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별표를 삭제하고 시립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시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의 적용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